

기독교역사문화연구소 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‘대신대학교 부설 기독교역사문화연구소 (Institute for Church History and Culture)’라 칭한다.

제2조(소재지) 본 연구소의 사무소는 대신대학교 안에 두며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에 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3조(목적) 본 연구소는 대구·경북지역 기독교 역사와 관련한 주제를 연구하며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여 대학의 학문 발전의 이 지역 기독교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대구·경북지역 기독교 역사·문화 연구
2. 세미나, 공개강좌 등 기독교역사 교육 및 문화사업
3. 대구·경북지역 기독교관계 사료 수집 및 지교회사 편찬, 정리
4. 연구소 학술지, 단행본, 자료집의 출판 보급
5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

제2장 조 직

제5조(소장)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장을 둔다.

1. 소장은 본교에 재직 중인 역사신학전공의 조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준임 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본 연구소의 연구계획 및 운영 전반의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1. 위원회는 본교의 교직원 중 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(2~5인)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2.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3.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7조(연구원) 본 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실제적으로 담당할 연구원을 아래와 같이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1. 연구원은 본교의 전임교원, 비전임교원 또는 각계의 전문인사들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 연구소에서 위촉한다.
2. 연구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정의 연구비 및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직원 등) ① 본 연구소의 연구업무 수행을 보좌할 수 있도록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직원의 임명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조교는 본교 근로 장학생 중 소장이 임명한다.

제9조(후원회) ① 본 연구소의 목적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.

제10조(출판위원회) ① 본 연구소의 출판관련 업무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출판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출판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.

③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에는 ‘대신대학교 부설 기독교역사문화연구소’가 명기되어야 한다.

제3장 재 정

제11조(수입원) ① 본 연구소의 재정은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재정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연구소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본교 보조금
2. 재정후원회 후원금
3. 정기 및 특별회원 회비
4. 기부금
5. 기타 수입

제12조(회계연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13조(재정지출) 본 연구소의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 재정 지출은 총장의 결재에 의해 집행되는 것을 원칙을 한다.

제14조(총장의 승인) 본 연구소의 매년 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5조(개정)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